통권 407호

2017 7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3일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를 주제로 2017년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기사 30면)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4일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열린 가족법 교육. (관련기사 31면)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3 mac-2 Adobe PDF 2540D FH 175LPI
c m y k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심포지엄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❶
21 • 가정폭력상담실
26 • 인터넷 상담
27 • 좋은 책
참고문헌 없음
28 • 결혼과 인생(173) 만화일기
톡톡해 _ 장차현실
29 • 임상실습 소감문
30 • 상담소 소식
32 • 지부 소식
34 • 상담통계
35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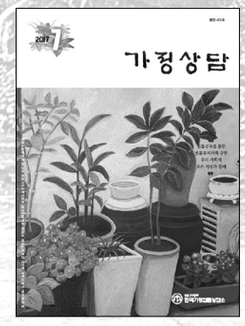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7. 7.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 4 mac-2 Adobe PDF 2540D FH 175LH

c m y k

'가정폭력특별법' 을 생각하며 ❶

'가정보호' 와 '피해자보호' 라는 양 날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이곳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지금도 상담소의 대기실에는 가정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상담 통계에 따라 몇 가지 사유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구체적 사연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 부부문제이고 어떤 이들은 이미 결론에 이르러 '이혼' 을 결정하고 그 방법을 알기 위해 찾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지금 직면해 있는 혹은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등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가정을 깨지 않고 이를 해결하여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소를 찾습니다.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이며 동시에 비천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가정 또한 한 존재의 근원으로서 평화와 행복, 위안의 안식처이지만 때로는 불행과 비참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가정폭력' 의 문제 또한 이러한 모순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정폭력특별법' 을 둘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5 mac-2 Adobe PDF 2540D FI 175LPI
cmyk

러싼 논의의 과정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개인과 가정, 폭력에 관한 사회적 담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대원칙 이외에 어떤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특별법은 행위자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의의란 사소한 집안 일,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을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식시키고 그것을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한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년을 지나는 동안 20회 이상 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정폭력의 문제에 주목해 왔고,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정법률상담소는 두 세대를 넘어서는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가정과 가정폭력이라는 모순, 그리고 그 모순들이 빚어내는 갈등과 마찰이 한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게 됩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상담을 하면서 저는 늘 가정 내에서 개인(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의 중요성을 놓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그들이 원하는 길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담자 각각에 따라서는 가정의 중요성보다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보호를 더 중요시 하는가 하면 자신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가정보호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착과 방법을 논할 때, 그 궁극적 목표를 피해자 인권보호 그리고 가정보호에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상담소 밖의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정보호 보다는 개인(피해자)의 인권보호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아니 가정보호 부분은 아예 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가정폭력특별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과 폭력이라는 모순적 상황과 대처에 있어 가장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고 그것은 또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그 중에서도 부부폭력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아직도 이혼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접근금지를 신청한 아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편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로 간 아내가 자신의 위치를 남편에게 알리는 경우를 저는 상담을 통해 자주 접합니다. 그런가하면 가정폭력행위자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상담소에서 행해지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인 아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타인 간의 폭력과 같은 폭력이라고 해서 형법으로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운 미묘하고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 점이야말로 '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라는 가정폭력특별법의 취지와 목표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가정에 관한 많은 사회적 논의들 속에서 제 자신 혹은 상담소의 입장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은 아닌지 짚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담소는 지극히 현실을 바탕으로 인권의 보장과 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면서 실천적으로는 한 발 앞선 법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사회상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소 또한 사회의 변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에 발맞추어 혹은 한 걸음 정도 앞서 당대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는 사회적 기구로서 언제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6 mac-2 Adobe PDF 2540D FI 175LPI
c m y k

특집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Ⅱ❶*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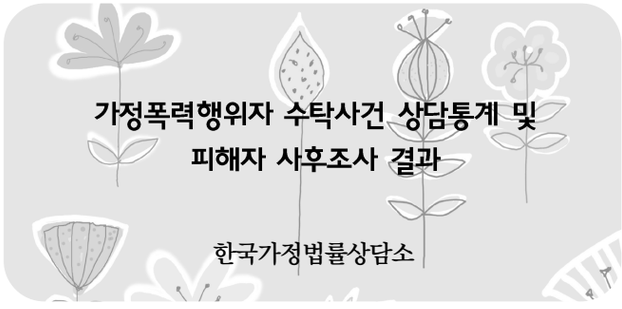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 안에 갇혀 있던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등 입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그 폭력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지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폭력성행 교정처분인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1997년 이래 20회 이상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위자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처

* 지난 6월 23일 열린 본소의 2017년 두 번째 심포지엄으로,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아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본소의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7 mac-2 Adobe PDF 2540D FI 175LPI
cmyk

벌법의 제1조 목적조항의 근본취지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2017년 6월 현재까지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1,469명의 행위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행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된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등 분석을 통하여 법적 제재와 성행교정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 사건 당시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등 피해자 사후조사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용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가정폭력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2016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안전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등을 살펴본다.

둘째, 피해자 사후조사를 통해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안전도 등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적 차원의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개입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6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81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분석에서는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행위자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안전도 등을 살펴보았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역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6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 및 검찰로부터의 상담위탁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피해자 총 181명 중 행위자의 불성실로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후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등을 제외한 총 138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으며,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56명을 제외하고 피해자 82명의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8 mac-2 Adobe PDF 2540DH 175LH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2016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남녀별

행위자 181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7명(81.2%), 여성이 34명(18.8%)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14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구분 / 성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147	81.2	50	27.6
여 성	34	18.8	131	72.4
합 계	181	100	181	100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5.9%(6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8.2%), 30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34.3%(6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6%)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 연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미만	–	–	4	2.2
10 대	3	1.7	10	5.5
20 대	8	4.4	15	8.3
30 대	31	17.1	29	16.0
40 대	65	35.9	62	34.3
50 대	51	28.2	47	26.0
60대 이상	23	12.7	14	7.7
합 계	181	100	181	100

(3)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2%(7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3.1%(60명)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38.7%(7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6.4%(66명)로 나타났다.

구분 /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8	4.4	19	10.5
중 졸	22	12.2	15	8.3
고 졸	76	42.0	70	38.7
전문대졸	9	5.0	7	3.9
대 졸	60	33.1	66	36.4
대학원이상	6	3.3	4	2.2
합 계	181	100	181	100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이 24.8%(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2.6%(41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7%(6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6.5%(30명)를 차지하였다.

구분 / 직 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15	8.3	67	37.0
회사원	41	22.6	30	16.5
단순노무	31	17.1	16	8.8
자영업	45	24.8	23	12.7
교육직	1	0.6	3	1.7
전문직	5	2.8	5	2.8
기술직	10	5.5	3	1.7
운전	7	3.9	1	0.6
학생	4	2.2	17	9.4
무직	22	12.2	16	8.8
합 계	181	100	181	100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9 mac-2 Adobe PDF 2540D FH 175LH
c m y k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3.8%(4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0.4%(37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역시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4.7%(9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6	3.3	5	2.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5	19.3	30	16.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7	20.4	20	11.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4	18.8	16	8.8
500만원 이상	26	14.4	11	6.1
일정한 수입이 없음	43	23.8	99	54.7
합 계	181	100	181	100

(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률혼 부부인 경우가 117명으로 64.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가 22.7%(41명)으로 나타났다. 〈표 3-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구 분 / 관 계	수 (명)	백분율(%)
법률혼 부부	117	64.6
사실혼 부부	16	8.8
이혼 부부	3	1.7
부모-자녀 관계	41	22.7
남매 관계	2	1.1
조손 관계	2	1.1
합 계	181	100

(7) 혼인형태별[1]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9.7%(106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혼인형태	수 (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06	79.7
(남)재혼-(여)초혼	2	1.5
(남)초혼-(여)재혼	11	8.3
(남)재혼-(여)재혼	14	10.5
합 계	133	100

(8) 동거기간별[2]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가 25.5%(34명)로 가장 많았다.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부부갈등이 오랜 기간 미해결상태로 축적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4.1%(32명)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관심사가 되는 시기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를 통해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 동거기간	수 (명)	백분율(%)
1년 미만	3	2.3
1년 이상 ~ 5년 미만	20	15.0
5년 이상 ~ 10년 미만	23	17.3
10년 이상 ~ 20년 미만	32	24.1
20년 이상 ~ 30년 미만	34	25.5
30년 이상	21	15.8
합 계	133	100

1)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3명)에 국한하였다.
2)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3명)에 국한하였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10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8%(105명)로 가장 많아 가정폭력 중에서 부부폭력, 특히 아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3]이 19.9%(36명)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2.7%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폭력유형 \ 구분		수(명)	백분율(%)
부부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105	58.0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9	4.9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15	8.2
	아내 및 자녀 폭력	7	3.9
부모-자녀 관계	자녀 폭력	29	16.0
	부모 폭력	12	6.6
기타관계	조부모에 의한 손자 폭력	1	0.6
	손자에 의한 조부모 폭력	1	0.6
	형의 남동생 폭력	1	0.6
	남동생의 누나 폭력	1	0.6
합 계		181	100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4.4%(171명)로 가장 많았다.

폭력수준 \ 구분	수 (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171	94.4
1주 이상 ~ 5주 미만	9	5.0
5주 이상 – 10주 미만	1	0.6
합 계	181	100

(3) 폭력행위의 정도[4]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밀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행위자 181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은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쉽다.

행위자 181명 모두 경미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87.3%(1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6.7%(157명)로,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67.4%(1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49.2%(89명)로 나타났다. 칼이나 도끼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도 28.7%(52명)에 달했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1) 폭력행사 원인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1%, 134건), 부부간 불신(21%, 88건), 음주(17%, 71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위 세 가지 원인은 순위의 차이는 있더라도 행위자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7명, 3.9%)도 포함되었다.

4)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언어 폭력(1문항), 경미한 폭력(5문항), 심한 폭력(6문항)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11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항 목	폭력동반 유무	
	없음	있음
언어 폭력	–	93(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181(100)
경미한 폭력	–	181(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00(55.2)	81(44.8)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109(60.2)	72(39.8)
4. 배우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16(64.1)	65(35.9)
5. 배우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23(12.7)	158(87.3)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51(28.2)	130(71.8)
심한 폭력	24(13.3)	157(86.7)
7. 배우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2(50.8)	89(49.2)
8. 배우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35(74.6)	46(25.4)
9.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59(32.6)	122(67.4)
10. 배우자 목을 졸랐다.	135(74.6)	46(25.4)
11.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29(71.3)	52(28.7)
12. 배우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134(74.0)	47(26.0)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1%, 134건)로 나타났다.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대화, 특히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다르다'는 갈등표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편향된 남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 순종하고 매사 남편 말에 따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불만도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힘)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21%, 88건)이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17%, 71건)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4.8%(63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는 14.8%(62건)으로 2013년 8.5%(8건), 2014년 12.5%(21건), 2015년 13.3%(31건)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2 페이지12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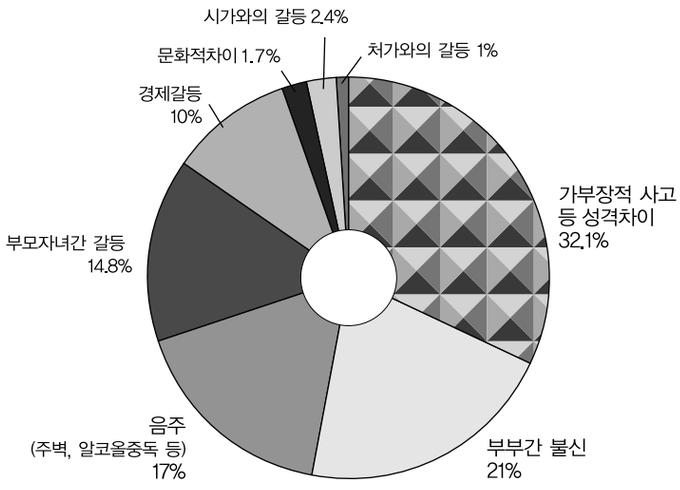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그림 1. 폭력행사 원인]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1) 상담대상자별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8.4%(160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 상담대상자	수 (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21	11.6
행위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상담	160	88.4
합 계	181	100

(2) 상담방법별

2016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성장배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사정하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시에는 기초조사를 통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유, 원가족관계 파악, 가정폭력처벌법 및 법적용절차 안내, 상담에 대한 행위자의 기대를 확인, MBTI 검사 실시,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모색 등을 통하여 폭력의 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배우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상담기간 동안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16년도에는 1,603건의 개별상담, 32건의 부부상담, 31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또한 정신과 연계도 3건 진행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16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

구 분 /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	32	17.7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20	11.0
개별상담 · 집단상담	14	7.7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15	63.6
합 계	181	100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3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8회로 117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2회로 20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상담은 집단역동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과 문제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단피드백을 통해 상호지지 및 대인관계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2016년도에는 행위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 부모폭력 자녀대상 집단상담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간 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단상담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4회 실시되었으며, 총 184명이 참석하였다. 부부 집단상담은 총 33회 실시되었으며, 총 104명이 참석하였다. 자녀폭력 행위자 부모 대상 집단상담은 총 12회 실시되어 총 43명 참석하였고, 부모폭력 행위자 자녀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 실시되어 총 20명 참석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미술심리치료집단상담은 총 6회 실시되어 5명의 폭력노출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둥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둥지교실' 이라는 이름에는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둥지' 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둥지교실」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족,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둘째,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셋째, 바람직한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도에는 비폭력대화 및 분노조절 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총 11회의 둥지교실 교육강좌가 실시되었으며 총 400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 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4월, 7월, 11월에 3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행위자 부부 57쌍과 그 자녀 39명 등 총 153명이 참석하였다. 부부캠프를 통하여 부부갈등에 내재된 원인 및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며 분석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 개별상담은 상담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 1시간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총 365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부부갈등문제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도에는 11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총 78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라오니 모임이 확장된 제2회 라오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라오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뮤지컬 관람 등 문화적 체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라오니 캠프에는 총 17명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참석하였다.

2016년에 상담이 종료된 181명의 82.3%(149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관계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4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3)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133명) 상담종료시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7.9%(7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거를 결정하였더라도 여전히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는 17.3%(23명)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냉담한 관계에서 동거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종료 후에도 전화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미해결의 상태로 축적되어온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도 6.8%(9명)을 차지하였다. 이혼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혼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점검해보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41명) 상담 종료 이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61%(2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24.4%(10명)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피해자 사후조사 결과

1.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피해자 총 181명 중 행위자의 불성실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후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등을 제외한 총 138명에게 피해자 사후조사를 위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56명을 제외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후조사가 완료된 피해자 수는 총 82명[5]이었다.

다음 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성별을 보면 여성이 63명(76.8%), 남성이 19명(23.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9%(32명)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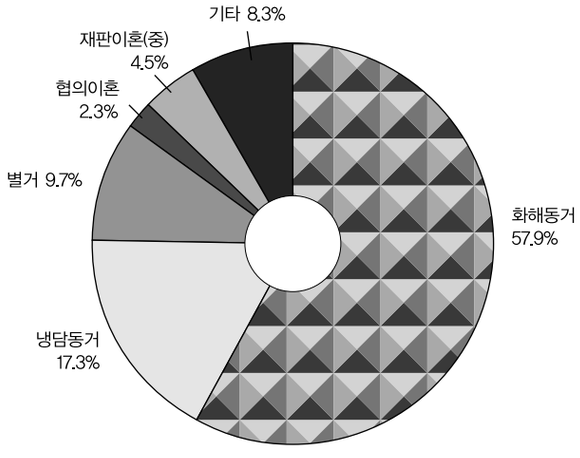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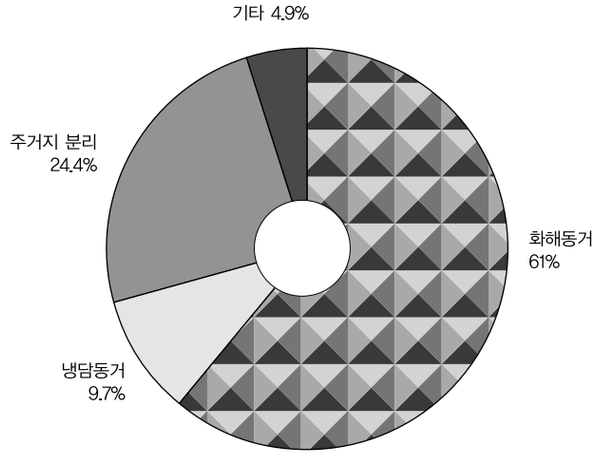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모자녀 관계]

5) 피해자 사후조사가 완료된 82명은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5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 성	구 분		N(%)
성 별	여		63(76.8)
	남		19(23.2)
연 령	20대		5(6.1)
	30대		14(17.1)
	40대		32(39.0)
	50대		25(30.5)
	60대 이상		6(7.3)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12.2)
	중졸(중퇴포함)		3(3.7)
	고졸(중퇴포함)		29(35.3)
	전문대졸(중퇴포함)		5(6.1)
	대졸(중퇴포함)		32(39.0)
	대학원졸(중퇴포함)		3(3.7)
직 업	주부		38(46.4)
	회사원		14(17.1)
	단순노무		5(6.1)
	자영업		11(13.4)
	교육직		2(2.4)
	전문직		3(3.7)
	무직		7(8.5)
	학생		2(2.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2.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4(17.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11.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9.8)
	500만원 이상		2(2.4)
	일정한 수입 없음		47(57.3)
행위자와의 관계	배우자	아내	55(67.0)
		남편	10(12.2)
	부 모	아버지	4(4.9)
		어머니	3(3.7)
	자 녀	성인자녀[6]	10(12.2)

6) 성인자녀 10명의 성별의 살펴보면 여성이 5명, 남성이 5명이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6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30.5%), 30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39%(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5.3%(29명)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가 46.4%(3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7.1%(14명)을 차지하였다. 월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7.3%(4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내인 경우가 55명(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편[7]과 성인자녀(각 12.2%) 순으로 나타났다.

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은 행위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가 58.6%(48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N(%)
6개월 미만	1(1.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3(40.2)
1년 이상	48(58.6)
합 계	82(100)

3. 상담위탁 보호처분시 및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시 행위자와의 관계

우선 피해자와 행위자가 부부인 경우를 살펴보면,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시에는 86.2%(56명)가 동거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에는 75.4%(49명)로 1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는 6.1%(4명)에서 20%(13명)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행위자가 부부-자녀관계인 경우를 살펴보면,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시에는 58.8%(10명)가 동거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사후조사 시점에는 52.9%(9명)로 감소하였다.

4.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1) 행위자 고소 당시 원했던 법적조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를 고소할 당시 원했던 법적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첫째,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겁을 주고 싶어서' 신고한 경우가 31.7%(26명)로 가장 많았다. 둘째, 피해자는 법절차를 몰라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

〈 행위자 고소 당시 원했던 법적 조치 〉

구 분	피해자가 원했던 구체적인 법적 조치 내용	N(%)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행위자에게 겁을 주고 싶어서 신고하였다.**	**26(31.7)**
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저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18(22.0)
형사처벌을 원했다.	1개월 이상의 징역	12(14.6)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5(6.1)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원했다.	-	11(13.4)
행위자가 너무 두려워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행위자와 격리되기를 원했다.	10(12.2)
합 계		82(100)

7) 피해자가 남편인 경우 10명 중 6명은 상호간 폭력으로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7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한 채 '그저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경우'가 22%(18명)로 나타났다. 셋째, 1개월 이상의 신체형 '형사처벌'을 원한 경우도 20.7%(17명)로 나타났다. 넷째, '폭력성 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원했던 경우가 13.4%(11명)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행위자가 너무 두려워서 경찰의 도움, 구체적으로는 접근금지 등을 통해 '행위자와 격리되기를 원한 경우'도 12.2%(10명)로 나타났다.

(2)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적절성

실제 행위자에게 내려진 법적조치인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비추어 보아 적절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피해자의 63.4%(52명)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적절했다고 응답하였다.

구 분	N(%)
적절했다.	**52(63.4)**
경미했다.	25(30.5)
적절하지 않았다.	5(6.1)
합 계	82(100)

5.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1) 행위자의 폭력성 개선 여부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현재 행위자의 폭력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개선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의 75.6%(62명)은 행위자의 폭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행위자의 폭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62명 중 38.7%(24명)은 그 이유로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구 분	N(%)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24(38.7)**
갈등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21(33.9)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17(27.4)
합 계	62(100)

(2) 행위자의 폭력 재발 여부

상담위탁 보호처분 이후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의 82.9%(68명)가 신체적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소에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상담효과성 연구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수치(2006년 59.1%, 2008년 63.6%)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 재발 여부	없음	있음
신체폭력	68(82.9)	14(17.1)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68명의 경우,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20.6%), 협박이나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11.8%), 생활비

〈 행위자의 폭력성 개선 정도 〉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개선	20 (24.4)	–	4 (4.9)	1 (2.4)	5 (6.1)	7 (8.5)	11 (13.4)	5 (6.1)	12 (14.6)	2 (2.4)	15 (18.3)	82 (100)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8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를 중단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7.4%), 재물손괴(2.9%)는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재발된 경우

폭력 재발 여부	없음	있음
언어적 폭력	**54(79.4)**	**14(20.6)**
정서적 폭력	60(88.2)	8(11.8)
경제적 학대	63(92.6)	5(7.4)
재물손괴	66(97.1)	2(2.9)

(3)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 중단 이유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68명의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6.8%), 다음으로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5%).

6.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피해자의 안전도 점검

(1) 행위자와의 관계 개선 정도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현재 행위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물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개선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의 65.8%(54명)은 행위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현재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물었다.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의 82.9%(68명)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행위자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이유 〉

구 분	N(%)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25(36.8)**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17(25.0)
별거 또는 이혼으로 행위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	13(19.1)
폭력을 피해 잠시 밖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7(10.3)
갈등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6(8.8)
합 계	68(100)

〈 행위자와의 관계 개선 정도 〉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개선	28 (34.2)	1 (1.2)	2 (2.4)	1 (1.2)	4 (4.9)	10 (12.2)	7 (8.5)	13 (15.9)	9 (11.0)	–	7 (8.5)	82 (100)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19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도 〉

구분	전혀 안전 하지 않다										매우 안전 하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안전	14 (17.1)	3 (3.7)	3 (3.7)	2 (2.4)	4 (4.9)	8 (9.8)	7 (8.5)	7 (8.5)	12 (14.6)	2 (2.4)	20 (24.4)	82 (100)

(3)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더욱 안전해지려면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면서 다양한 의견[8]을 제시하였다(23.3%). 다음으로 법적 처분이 끝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17.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본소에 상담위탁되어 2016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처리결과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상담위탁 보호처분 종결 이후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 〉

구 분	N(%)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19(23.3)
법적 처분이 끝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4(17.1)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13(15.9)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2(14.6)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매스컴 등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9(11.0)
폭력발생 즉시 행위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져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8(9.7)
지역사회별로 무료상담 가능한 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2(2.4)
폭력발생 후 법적 처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2(2.4)
현행 접근금지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1(1.2)
경제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1.2)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강제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합 계	82(100)

8) 피해자는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6명, 7.3%), 부부상담 의무화(4명, 4.9%), 개별상담 확대(3.7%), 정신과연계 확대(3명, 3.7%) 및 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3명, 3.7%) 등을 제시하였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0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를 지닌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피해자는 행위자를 고소할 당시 처벌은 원하지 않았으며 행위자가 다시는 폭력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싶었다는 심리적 욕구를 알 수 있었다.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비추어 보아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적절했으며, 이를 통해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폭력성 또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면서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신체적 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고 행위자와의 관계 또한 개선되어서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지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정폭력 상담의 개입방향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발생시 법절차를 몰라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경우(22%)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무시,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가재도구 등 기물을 파손하여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경미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의 경우(30.5%) 6개월의 처분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현행 6개월의 처분기간으로는 행위자의 행동 및 정서가 변화되기에 부족하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의 과정으로 구성하되 행위자의 생업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개입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상담기간과 횟수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인 '가정보호'와 '인권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상담위탁 보호처분 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야 말로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조치라고 응답하였다(23.3%). 가족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과 치료연계를 통해 심리적인 접근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정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가해자의 폭력행위 축소보고, 형식적인 상담처분 이행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의견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행위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공동생활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한데 행위자는 보복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7.4%). 또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까봐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된 후 보호처분 기간까지 일정기간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1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다양한 가족관계 그리고 원가족에서의 뿌리 깊은 상처도 다양한 상담 통해 치유

사건번호 2016버6**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4회,
피해자(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6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6. 8. 2. ~ 2017. 2.2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하체를 때려 허벅지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4살 되던 해에 배우자의 요구로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양육하였으며 첫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재혼하여 본 건 피해자인 딸을 한 명 두었으며 재혼배우자와는 사이도 좋았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가 2012년 암으로 사망한 후 혼자서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느라 힘들었고, 자녀들이 엄마 없이 자랐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행위자의 엄격한 양육방식에 반발하고 사고를 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아들은 군대에 다녀온 후 갈등이 더 심해져서 행위자와 다투고 독립하였다. 피해자도 용돈 문제, 생활 태도문제 등으로 행위자와 갈등이 심해져 다투다가 본 건이 발생한 것이다, 행위자는 본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지 않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부모상담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후 고소한 것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행위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별세한 어머니도 행위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폭력사건 후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학기 중에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피해자 역시 행위자와 연락을 하지 않으며, 행위자와 화해할 생각은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행위자를 경찰에 고소한 이유는 행위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서였다. 피해자는 지방의 대학에 재학 중인데 상담 초기에는 방학을 맞아 서울에 있는 육

가정상담1707-Bp 2017.7.7 15:23 페이지22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촌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와 학비 등을 모을 계획이었다.

행위자는 상담 초기에는 상담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집단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신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고, 과거 피해자가 반성문을 적었던 기억 등을 떠올리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도 느꼈다. 스스로를 '바른 아빠' 였지만 '좋은 아빠' 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가 설 다음 날 새벽에 카톡으로 "아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온 것을 보고 일단 고마웠고, 바로 답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상담종결 시에는 혼자 원룸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당분간 학교는 휴학할 것이라고 하였다. 친구들 그리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소통이 잘되는 육촌언니와 이복오빠를 만나며 특별한 외로움은 느끼지는 않고 있었으며, 행위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각자 살기를 원하고 있어서 두 사람의 의사를 지지하였다. 다만,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새해인사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폭력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7년도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본소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진행되고 있는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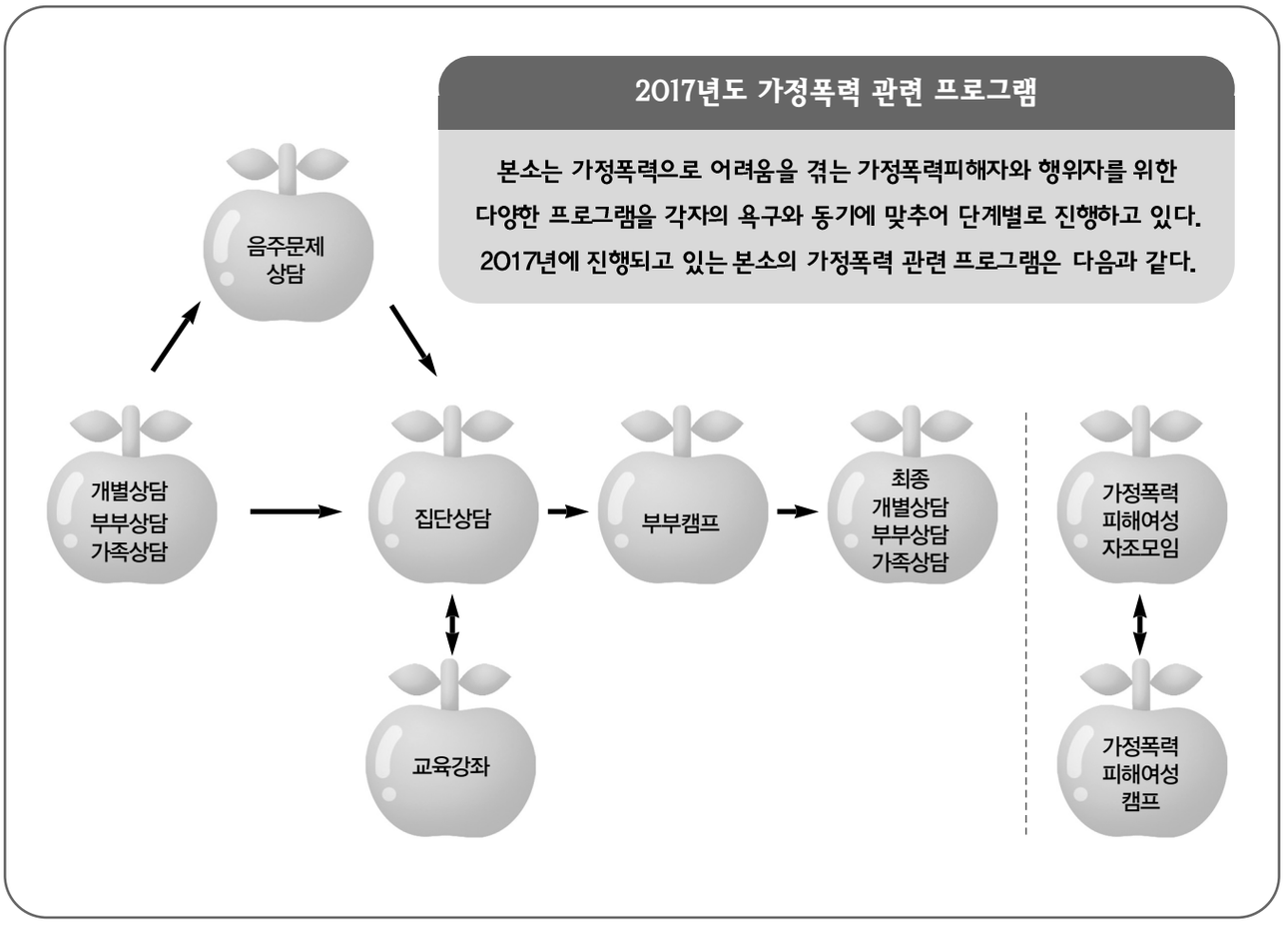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3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사건번호 2016버1***폭행/2016버1***폭행(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4회, 자조모임 2회,
부부상담 4회 등
총 35회 실시

상담기간

2016. 9.13. ~ 2017. 3.21.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년 된 재혼 부부로, 부부 사이에 1남(2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6년 5월 사건당일 가사와 육아문제로 다투다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발로 폭행하고 이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2016년 7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왼쪽 발등을 밟아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피해자는 부부갈등의 주원인으로 성격차이, 경제문제, 행위자의 음주문제 등을 꼽았으며 행위자가 피해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점들이 상담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부부 사이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갈등원인으로 꼽았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부는 먼저 음주문제상담에 각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수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늘 바빴다. 애증의 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자신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인식했고, 역기능적 가족에서 버려진 아이 혹은 잊혀진 아이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늘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점이 피해자와의 주요 갈등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 내면아이 치유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부부는 타임아웃에 대하여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고, 피해자가 이전에는 모든 것을 행위자의 탓이라고 하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상담중기에는 상담초기와 달리 행위자의 상담참여 동기가 강해졌고 상담에서 알게 된 바를 피해자와 공유하기도 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면서 경제문제에 있어서 부부간 신뢰 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피해자는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다고 하는 등 행위자의 변화와 부부관계에 매우 만족하였다

2017년 들어서 부부계획대로 피해자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다.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경력단절기간이 오래되면 좋지 않으므로 아이를 이어서 출산하고 3~4년 후 재취업할 계획인데, 피해자의 임신 또한 부부관계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담종결 시 피해자는 지금은 집이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곳이 되었고, 전과 달리 '행위자의 탓을 적게 하고 우리의 책임' 으로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전의 부부관계가 마이너스 점수였다면 지금은 10점 만점에 9.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이전에는 하루 온종일 싸웠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생각하는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네 탓이 아니라 우리 책임' 이라고 생각하게 된 변화라고 하였고, 이전의 부부관계가 10점 만점에 4점이라면 지금은 9.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4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사건번호 2016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8회,
부부집단상담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자조모임 1회,
부부집단상담 3회,
부부캠프 2회 등 총 28회 실시

상담기간

2016. 9. 27. ~ 2017. 4. 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1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19세, 17세)이 있고 함께 식품매장을 운영한다. 행위자는 2016년 6월 사건 당일 밤, 업무상 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일어나자, 자신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고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행위자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법원의 결정(2016년 9월 1일)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가까운 구청의 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6회기 예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상담을 인정하고, 이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는 10월 20일에 본 상담소에서 초상담을 하고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피해자는 행위자의 화를, 행위자는 피해자의 배려 없음을 갈등 원인으로 꼽으며 부부상담을 통하여 변화하기를 희망하였다.

부부집단상담을 통하여 부부가 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는데, 부부가 함께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 부부집단상담에 함께 참석하기 어려워 부부가 한 회기씩 번갈아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원가족 탐색에서 아버지가 '남자는 이겨야 한다' 고 했던 것이 현재 부부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상담이 진행되면서 과거 무조건 자신이 이기려던 모습에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욕설과 폭력으로 부부불화가 심해서 이혼도 생각하였지만, 부부가 함께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반응하는 노력을 한 결과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변화가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전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의 부부관계에 만족해하였다.

행위자는 종결상담에서 이전에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한다' 는 생각을 했고, 자신에게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 피해자 역시 맞받아치는 기질이 있어 서로 충돌했다면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피해자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폭언, 폭력의 재발이 없었으며 향후 폭력재발가능성도 희박하고 부부관계는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번호 2016버1***특수폭행/2016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 부부집단상담 1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3회,
자녀 미술프로그램 3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6. 9.19. ~2017. 4. 5.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5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6세)가 있다. 부부가 상호 폭력을 하여 부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남편은 외아들이고, 아내는 1남 2녀의 둘째딸이다. 아내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여러 번 망하였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등 친정의 형편이 어려웠는데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제력을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보고 결혼하였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바로 정리해고를 당하여 5년간 일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시가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주었는데 남편이 직접 생활비를 관리하고 지출하면서, 아내에게는 벌어서 쓰라고 하였다. 결혼 전 학원강사였지만 결혼 후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던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다시 일을 하였다. 남편은 2015년 10월부터 다시 일을 하였지만 본 폭력사건을 계기로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 2016년 사건당일, 아내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이는 하루 종일 잠을 잔 것 같고, 남편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밥을 먹고 세탁물을 널면서 '아이 이 좀 닦이라"고 짜증스럽게 말을 하였는데 남편이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투게 되었고 폭력으로 이어졌다. 부부는 일주일에 적게는 1~2회, 많게는 3~4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아내는 딸과 함께 시가 건물에 있는 본인의 학원에서 지내고 남편은 혼자 집에서 지냈다. 아내는 자신의 폭력을 인정하였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내는 원가족에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로 인해 돈을 벌어야 했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남편은 상담과 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상담에 집중하지 않았다. 남편은 원가족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폭력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 분노에 차있고 부부싸움에서 심한 욕설과 대응폭력을 하였다.

부부는 별거상태에서 상담에 참여하였다. 부부집단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담에 방어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일시적으로 남편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태도가 유순해졌으며 명절에는 처가에도 같이 가는 등 태도가 좋아졌지만, 이후 남편의 태도 변화로 다시 관계가 냉담해졌다. 아내는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면서 딸을 돌보느라 힘든 상황인데, 남편은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하였으며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종결상담 시 아내는 일이 많아져 바쁘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아내가 시가의 건물에서 지내고 있어 갈등의 완화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부의 애정이 깊어 시간이 경과하면 부부가 어떤 결론이든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6 mac-2 Adobe PDF 2540DH 175LH
c m y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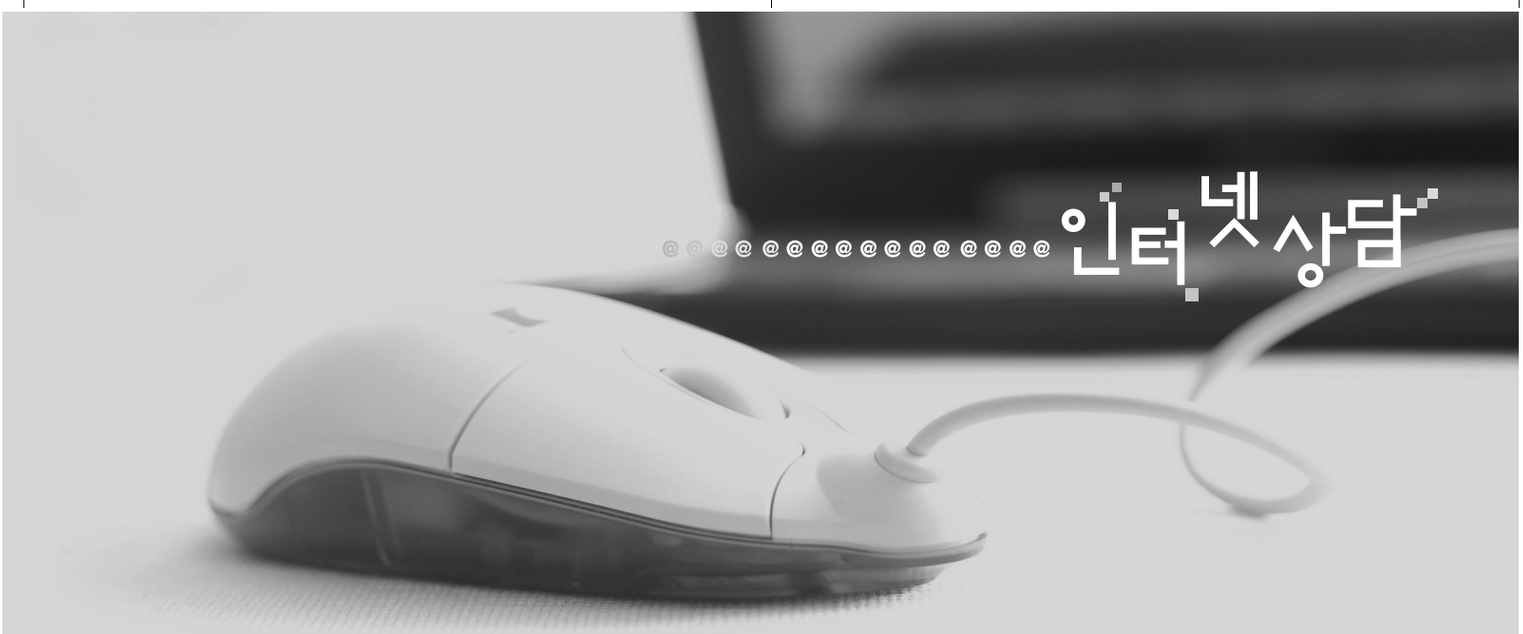

인터넷 상담

저는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남긴 재산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남편은 보증금보다 더 많은 빚을 남겼는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저희 가족들이 당장 살 곳이 없어 저는 한정상속을 하고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Q

A

민법은 제921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각 자녀들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므로, 특별대리인만 선임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을 하는데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직계존속(시부모, 시조부모)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귀하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와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있다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소한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정상속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7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좋은 책

참고문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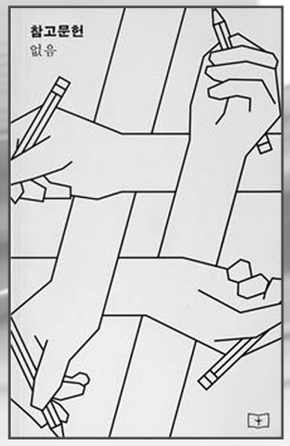

참고문헌없음 준비팀 엮음,
2017

3월 말쯤으로 기억한다. 예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적인 문화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이 책의 프로젝트에 후원을 했고 5월 중순에 책을 받았다.

책을 펼치면 첫 장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옮겨본다.

"이 책은 여성 문인들이 함께하는 #문단_내_성 폭력 발화, 싸움, 연대의 기록이자 피해고발자를 지지하는 프로젝트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이 책은 2016년 10월 중순부터 트위터 해쉬태그 등으로 촉발된, 문학계와 미술, 사진을 포함하는 문화계 등지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일련의 폭로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이민경의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에서 차용한 것이다.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출판사의 인턴사원, 여성 문인들이 겪었던 성폭력, 성희롱의 기록들은 읽어내기 조차 버겁지만, 용기를 끌어 모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은 함께 해야 할 것 같았다.

고발자a가 쓴 첫 기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2012년, 열여덟 살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스물 세 살 되었을 글쓴이를 책 읽는 내내 생각했다. 그리고 제발 이 일들에 발목 잡히지 말기를,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은 평화롭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출판사의 인턴사원으로 경험했던 일을 쓴 필명 '책은탁'이 "아직도 '무슨 일들이지' 묻는 이가 있다면 아래는 암기의 영역"이라며 정리해 놓은 내용을 외우려고 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유일한 범죄가 성과 관련한 것이라 했다. 2차 가해는 바로 가해지목자들에게 보내는 되도 않는 오지랖이다. 잘 모르겠다면 외울 일이다.

1. 피해호소인들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삶'과 가해지목자들의 '좁아지는 운신의 폭'을 감히 비교하지 말 것.
2. 피해호소인들의 '가능성'을 가해지목자들의 '단단한 현재'보다 소중하게 여길 것.
3. 피해호소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해지목자들의 '어려워질 미래'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할 것.
4. 가해지목자들의 가족에 대한 안쓰러움을 내세워 성폭력 사건에 물 타기 하지 말 것. 그렇게나 따스한 마음이 있다면 피해호소인들과 함께 고통 받는 그들의 가족을 먼저 떠올릴 것.
5. 가해지목자들이 받아낸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피해호소인들에게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 것.
6. 피해호소인들을 어떤 형태로든 겁박하지 말 것. 특히 말을 막지 말 것.

이 숙 현 편집부장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76

톡 톡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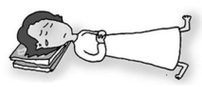

글 | 그림 | 장차현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겪었던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은 드디어 파면 되었다.

참아야했던 분노들 아이와 함께하며 생긴 슬픔들
불안전한 미래에 대한 불안…아이들과 지낸 시간20여년
이젠 좀 내려놓았지 싶어도 우린 매일 떠나고 싶어 한다.
나의 슬픔과 상처를 나누고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
우린 이곳을 '병원'이라 부르며 찾는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위로 받으며…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29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소에서 실습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후기를 싣는다.

강 예 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정' 은 개인이 속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로서 '가족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생활에서 반드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영역입니다. 처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무수습을 지원하게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내가 직접 속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수습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상황을 조금씩이나마 모두 겪어 볼 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은 이곳이 아니면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법률상담소' 에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혼과 친권에 관한 문제 외에도 가정폭력특례법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하여 가정폭력사건을, 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는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까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찮게 질문하는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모든 상담위원님들, 변호사님들, 법무관님들께 감사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을 관찰하고, 느낀 바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사실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 작고 부족한 도움에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일을 하는 보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마저 절실한 분들에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큰 도움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가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0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상.담.소 . 소.식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심포지엄 개최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3일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를 주제로 2017년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서울가정법원 등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수탁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정되어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법의 제정 이후 20회 이상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법 집행과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소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시점이라 보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으며 본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권양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는 고경순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혜정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철문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유향순 대표(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계성 원장(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등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 및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1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6월 22일에는 "분노의 의미와 기능"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를 분노가 하게하며, 또한 나와 타인과의 불완전한 관계를 교정하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으로 일차적 감정이자 사회적 감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여러 종류의 분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노를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57명이 참여하였고 추상적 의미였던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오는 8월 24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2017년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본소에서의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1기)이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 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실습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강예은 학생이 참여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6.14. 학교폭력예방교육14-수원하이텍고등학교
- 조은경

6.21. 구리시 양성평등법률교육-가족법강의
- 조경애

6.26. 강서자활지원센터 가족법교육
- 조은경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오동준, 장민수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21일 구리지부가 주최한 '여성주간 기념 구리시 양성평등 시민교육,에서 가족법개정사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26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주최한 전문가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14일 서울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고, 19일에는 곽배희 소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 석 수석전문위원 환담에 배석하였으며, 2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다. 30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개최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6월 15일 이천 가정 성 상담소 권이금자 대표와 이영실 소장의 방문을 받고 지부 설립과 관련하여 논의를 했으며, 16일에는 본소를 방문한 인천지부 권오용 소장과 인천지부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하여 상담소 사업과 예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2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지·부·소·식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민아, 김영주,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유정아, 윤원섭, 이소정, 이혜민, 형장우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진아, 박세리, 이승주, 장주용, 장철진, 전성배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곽민주, 맹현규, 박주연, 이민주, 이현지, 정재원, 정재희, 서인우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강릉지부

6월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관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총 2회(134명) 실시하였다.

군산지부

6월 13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조정을 실시하였다. 6월 10일~11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부부캠프를 실시하였다. 10일, 24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협력하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22일 신기동 근린공원에서 폭력예방교육 및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정민, 허노목, 최은철, 박진수, 김미조, 김주현, 박기대, 이용원, 나안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9회, 광주시법원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폭력예방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총 3개교, 484명). 민진국, 박지훈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김승구, 김정혜, 문대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3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 부부의 미성년자녀에 관한 의무면담을 12회 실시하였다. 6월 14일 보라 상담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상담소 및 수원권 경찰서(3개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성근, 홍성민, 박지현, 임용호, 박지훈(성남), 양승철, 황미옥, 최성중, 박지훈(수원), 한승일, 강은혜, 최지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3회 실시하였다.

울산지부

6월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익산지부

6월 9일 익산지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17일 익산시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여성과 심리전문가가 함께 떠나는 힐링시네마"를 진행하였고, 28일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6회, 협의이혼상담을 1회 실시하였다. 6월 16일 이사회 및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최혜욱, 박병건, 김은진, 김한빛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6월 16일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을 진행하였다. 박진석, 전수경, 장경아, 이동건, 홍지혜, 임유정, 김영옥, 이영주, 황은하, 김형석, 고승현,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 · 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회,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2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백경석, 민태식, 박인욱, 이창희, 이재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22명).

춘천지부

춘천교차로, 춘천벼룩시장, 강원GBN방송에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4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2017년 5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5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401건으로 본부가 6,998건, 지부가 5,403건이었다.

본부는 6,471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75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09건 · 소송구조 43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690건 · 화해조정 662건 · 소장 등 서류작성 24건 · 소송구조 27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47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8%→0.9%), 인지(1.0%→1.4%), 친생부인(0.7%→1.3%), 입양(1.4%→1.5%), 파혼(0.2%→0.5%), 부양(1.3%→1.4%), 유언 · 상속(5.0%→5.3%), 가족관계등록부(2.0%→2.4%), 성변경(0.9%→1.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4.3%→5.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2%→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47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10건(17.2%), 전화상담 5,094건(78.7%),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6건(4.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6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404			
법률상담 (6,823)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124	5,463	235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11	126		44

*2017/6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43,477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합계			
서울(본부)	6,998	1,110	5,094	266		지상 1	6,471	375	109	43
강 릉 (033) 652-9555	120	95	20				115	4	1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202	60	68				128	70	1	3
군 산 (063) 442-1560	77	26	27				53	21	1	2
대 구 (053) 745-4501	404	146	5	9		출장 122	282	121		1
대 전 (042) 520-5258	219	29	187				216		3	
동 해 (033) 535-0188	105	79	26				105			
목 포 (061) 273-2514	189		185	1			186	3		
부 천 (032) 667-2314	335	60	170				230	105		
성 남 (031) 707-6661	286	140	70	4		출장 30	244	37	3	2
수 원 (031) 243-4600	414	127	168			출장 36	331	83		
순 천 (061) 753-9910	186	50	128				178	7		1
중 구 (02)2238-6554	319	213	106				319			
안 동 (054) 856-4200	100	17	71				88	12		
울 산 (052) 246-9568	169	29	133				162		5	2
익 산 (063) 851-5113	235	69	157			출장 6	232		1	2
인 천 (032) 865-1120	366	181	162				343	12		11
전 주 (063) 244-2930	209	133	36	39	1		209			
정 읍 (063) 535-3705	108	72	32				104	3	1	
진 주 (055) 746-7975	135	36	65				101	32		2
창원 · 마산 (055) 261-0280	300	157	97				254	43	3	
청 주 (043) 257-0088	216	41	64	1			106	108	2	
춘 천 (033) 257-4688	279	23	10			출장 245	278	1		
태 백 (033) 554-4004	177	146	13			출장 18	177			
평택 · 안성 (031) 611-4251	109	36	70				106		3	
제 천 (043) 644-5690	79	13	66				79			
포 항 (054) 283-7555	65	12	52				64			1
지부총상담	5,403	1,990	2,188	54	1	출장 457	4,690	662	24	27
총 상담	12,401	3,100	7,282	320	1	출장 457 지상 1	11,161	1,037	133	70

**2017/5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44,78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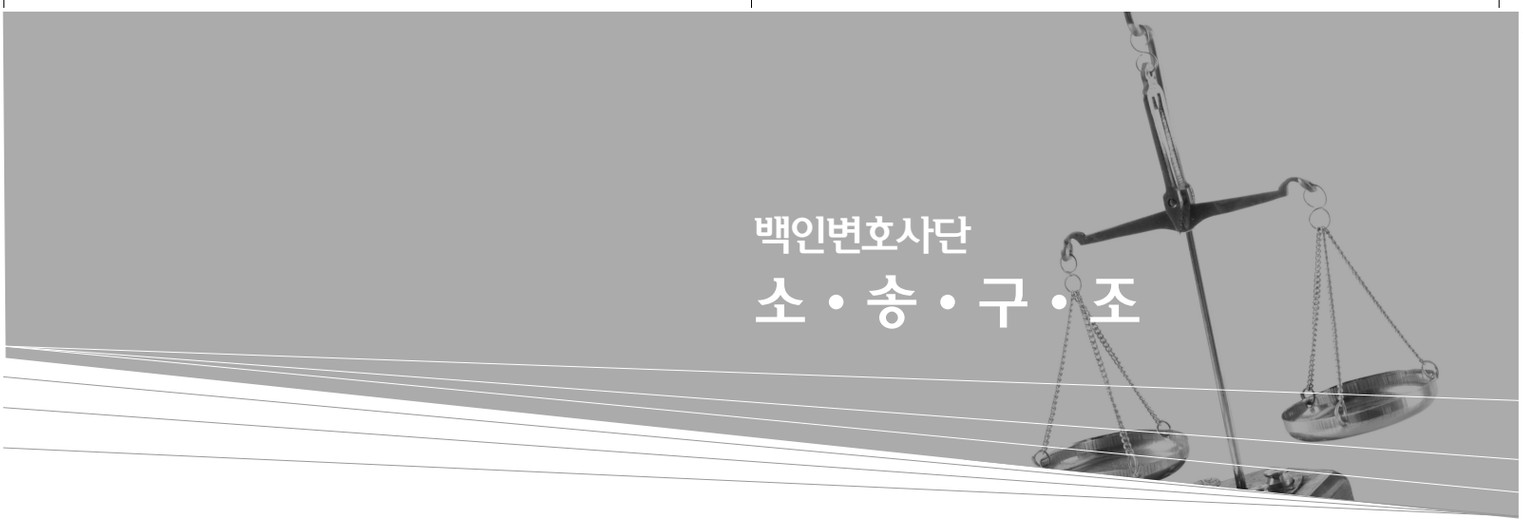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배우자의 병원비와 사업으로 많은 빚을 진 40대 여성에게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5-537

담당 : 서혜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48세)은 1999년경 남편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장판막폐쇄술' 수술을 한 이후부터 경제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의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가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해결하였다. 배우자는 퇴원 이후에도 예전만큼 일을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세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와도 사이가 안 좋아진 신청인은 2011년 6월 이혼 후 한 초등학교에서 일용 돌봄 교사로 일하며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이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하며 채무까지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5. 29)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세 번밖에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이행 조정성립

법률구조 2016-179

담당 : 박준이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8세)과 피신청인(남, 40세)은 2002년 12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여, 10세, 9세)을 두고 살다가, 2015년 1월 강제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12.부터 2017.12.까지 사건본인 1인당 30만원씩 합계 60만 원을, 2018.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2015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회분인 180만원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한부모가정으로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강제조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수원지방법원 2017.5.1)

1. 피신청인은 이 조정성립일까지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2017.5.31.까지 **지방법원2015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6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신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위 집행이 해제되는 즉시 7,915,000원을 2018.1.1.부터 2018.12.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월 최저 분할상환금은 300,000원으로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나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

3.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219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6세)는 1994년 8월 경 혼인신고 하고 슬하에 세 명의 자녀(남 27세, 24세, 22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였고 이때부터 피고는 도박을 하면서 원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임신 중인 원고의 배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원고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하였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피고는 양육에 더 관심이 없었고, 자녀들을 칼로 위협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2004년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5.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 · 지상 · 순회 · 인터넷 · 출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7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의심한 남편에 대한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254

담당 : 민진국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39세)는 2004년 6월 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3세, 남 11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의 말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시부모와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화풀이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피고를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오히려 원고를 의심하며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5.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원씩을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 ·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매월 1회, 둘째 토요일 09:00부터 다음 날 19:00까지

나. 여름, 겨울방학기간 동안 원 ·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6박 7일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과도한 음주와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357

담당 : 전태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46세)는 2008년 5월 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원고는 전부소생의 자녀(여, 25세)를 두고 있다. 평소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던 피고는 스스로 분을 삭히지 못해 삭발을 한 적도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처가에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 또한 멋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본가로 내려가 지내는 일이 반복되어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카드를 정지시킨 바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는 술병과 유리잔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급기야 전부소생의 자녀를 향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며 흉기를 찾는 와중에 원고와 자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생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 일로 현재 자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5.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정상담1707-8p 2017.7.7 15:23 페이지38 mac-2 Adobe PDF 2540D H 175LH
c m y k

자신의 자녀가 오빠 부부의 자녀로 기재된 것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통해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7-87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내용 : 원고(여, 51세)는 피고1(여, 20세)의 친모이고, 피고 2는 원고의 오빠이자 피고1의 법률상 부이며, 피고3은 피고1의 법률상 모이다. 원고는 1995년경 일본에 체류하던 중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피고1을 임신하였으나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어, 이후 혼자 한국에 돌아와 피고1을 출산하였다. 원고의 부친이 원고가 미혼모로 피고1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염려하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1을 원고의 오빠 부부인 피고2 · 3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1은 모녀관계로 현재까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6.1)

1. 피고1과 피고2,3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상담은 이렇게 …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2017년 7월 교육강좌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17년 7월 22일(토)~7월 24일(월)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장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내용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2.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4시~8월 27일(일) 오후 1시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48개월이상-중학생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 K)호텔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 접수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여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7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8월 24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